사	업	2024-01-01	주소기	업 등 기준검토표		법 인 명	비트맥스 주식회사	
연 	도	2024-12-31			사업 자 등 록 번 호	114-86-83769		
구분		① <b>요</b>	건	② 검 토 내 용			③ 적합 여부	④ 적정 여부
	(101) 사 업 요 건	①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②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③「법인세법」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※ ②, ③은 2025.0.0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		구분 2 업태별 (01) (02 ( 서비스 )업 (05 ( )업 (06) ( )업 (06) 고밖의 사업 계	사업수입금액 (07) 363,996,120 (08) (09) 363,996,120	(17) 적합 (Y) 부적합 (N)		
중	(102) 규 모 요 건	<ul> <li>아래 요건 ①,②를 등</li> <li>① 매출액이 업종별로 시행령」 별표 1의 - 매출액등"은 "매출액</li> <li>② 졸업제도 -자산총액 5천억원</li> </ul>	「중소기업기본법 규모기준("평균 付"으로 봄) 이내일 것	가. 매출액 - 당회사(10) ( -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( 800.0 억원) 0 나.자산총액(12) (	(18) 적합 (Y) 부적합 (N)	(26)		
기 업	(103) 독 립 성 요 건	o 「조세특례제한법 · 항제3호에 적합한	_	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 · 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    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의 30퍼센트 이상을 직 ·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    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서 같은 영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이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((102)의① 기준) 이내일 것				(Y)
	(104) 유 예 기 간	○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유예기간에 있는 기업일 것		①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(102)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최초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[2024년 11월 12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최초로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는 5개(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7개)]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고 그 후에는 매년마다 판단 ②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제1항제2호,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 ○사유발생 연도(13) ( 년)				부 (N)
	(105) 사업요건 및 독립성요건을 충족할 것		중소기업 업종(101)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하고, 독립성 요건(103)을 충족하는지 여부			(21) (Y) (N)	(27)	
소 기 업	(106)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으로서 매출액 이 업종별로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3의 규모기준("평균매출액등"은 "매출액"으로 본다) 이내일 것		가. 매출액 - 당 회사(14) ( 3.6 억원) -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3의 규모기준(15) ( 50.0 억원) 이하			(22) (Y) (N)	적 (Y) 부 (N)	

구분 	① 요 건	② 검 토 내 용				③ 적합 여부	④ 적정 여부
중 견 기 업	(107)「조세특례제한법」상 중소기업 업종 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	중소기업이 아니고, 중소기업 업종(101)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하는지 여부				(23) (Y),(N)	
	(108)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 행령」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할 것	「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     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8조제2 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30% 이상을 직 · 간접적으로 소유한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(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제2조제3항에해당하는 기업은 제외)				(24) (Y) (N)	(28) 적 (Y)
	(109)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다음의 중견기업 대상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할 것 ①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[구 「조세특례제한 법」제5조제1항(2020. 12. 29. 법률 제17759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]: 1천5백억원 미만					(25)	(N)
	(신규상장 중견기업에 한함) ② 연구・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(「조세	직전 3년	직전 2년	직전 1년	평균	(Y) (N)	
	특례제한법」 제10조제1항제1호가목2)): 5 천억원 미만 ③ 기타 중견기업 대상 세액공제: 3천억원 미만	( 23.7 억원)	( 28.6 억원)	( 16.1 억원)	( 22.8 억원)		